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4776
----------	-------

제안연월일 : 2020. 3.

제안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8년 3월 27일 제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8. 7. 2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8년 12월 12일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9. 3.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9년 3월 18일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9. 8.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19년 6월 12일 김수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19. 11. 1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18. 11. 23)와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19.10.24.),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 11. 21.)에서는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바. 제37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2019. 11. 25.)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가상자산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효율적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을 정의하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나.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를 할 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의무 이행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것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금융거래를 거절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4항).

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에게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 영업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제17조 및 제19조).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및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의 이행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부대의견

금융위원회는 제7조제8항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개시 기준 및 조건에 대한 시행령 입안 과정에서 법률 개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외국환거래(外國換去來) 등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 등을”로 한다.

제2조제1호하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거목(중전의 하목) 중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 등”이란”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 1)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하는 행위
- 2)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 3)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제1호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

3.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에”를 “제9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제11조의2에”를 “제15조의2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제7조에”를 “제10조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 중 “제7조의2에”를 “제10조의2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8조에”를 “제11조에”로 한다.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4조제1항제1호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7항 중 “금융거래의”를 각각 “금융거래등의”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를”을 각각 “금융거래등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나목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

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

라. 제7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

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

1) 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 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

1.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

실의 확인

나. 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확인

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

라.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의 확인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관계가”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금융거래자료”를 “금융거래등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거래관계가”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금융거래의”를 “금융거래등의”로 한다.

4. 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제3장(제6조부터 제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신고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3. 이 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

4. 제4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⑨ 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중전의 제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0조(중전의 제7조)제1항제2호 중 “제8조제1항에”를 “제11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6조에”를 “제9조에”로 하며, 제10조의2(중전의 제7조의2)제1항 중 “제7조제1항제3호에”를 “제10조제1항제3호에”로, “제7조에”를 “제10조에”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9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신설하고,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에”를 “제13조에”로, “제11조제7항에”를 “제15조제7항에”로, “제7조제8항의”를 “제10조제8항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에”를 “제10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1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7조제9항에”를 “제10조제9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에”를 “제13조에”로, “제11조제7항에”를 “제15조제7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에”를 “제10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13조 및 제14조와”를 “제16조 및 제17조와”로 한다.

제12조의2(중전의 제9조의2)제1항 중 “제6조·제10조·제11조제7항에”를 “제9조·제13조·제15조제7항에”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제3호의”를 “제10조제1항제3호의”로, “제6조에”를 “제9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거래 관련”을 각각

“금융거래등 관련”으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12조)제1항 중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1조제7항은”을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1조) 앞에 “제6장 감독·검사”를 신설하고, 제15조제6항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나”를 “금융감독원장이나”로,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금융거래 정보나”를 “금융거래등의 정보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금융거래정보를”을 “금융거래등 정보를”로 한다.

제15조의2(중전의 제11조의2)제1항 중 “제11조제6항에”를 “제15조제6항에”로, 같은 조 제3항 중 “제11조제7항을”을 “제15조제7항을”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3조) 앞에 “제7장 벌칙 등”을 신설하고, 제16조제1호 중 “제10조제3항의”를 “제13조제3항의”로, “금융거래”를 “금융거래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을 “제12조제1항을”로, “제10조에”를 각각 “제13조에”로, “제11조제7항에”를 각각 “제15조제7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9조제1항을”을 “제12조제1항을”로, “제7조제8항의”를 “제10조제8항의”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 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중전의 제15조) 중 “제13조”를 “제16조”로, “제14조에”를 “제17조에”로 하고, 제19조(중전의 제16조) 본문 중 “제14조의”를 “제17조의”로 하며, 제20조(중전의 제17조)제1항제3호를 같은 항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제11조제1항부터”를 “제15조제1항부터”로 한다.

3. 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

제3조(금융회사등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

용례) 금융회사등의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금융거래등부터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않거나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5조의2제4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 확인의무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고객에 대한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의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가상자산거래부터 한다.

제5조(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한 법령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를」 제2조제3호”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제4조제6항제6호 및 제4조의3제3항제6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을 각각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③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로 한다.

④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거래”란”을 ““금융거래등”이란”으로, “금융거래를”을 “금융거래등을”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금융거래”를 각각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금융거래와”를 “금융거래등과”로, “금융거래나”를 “금융거래등이나”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1조(목적) 이 법은 <u>외국환거래</u> (外國換去來) 등 <u>금융거래</u>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 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 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 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p> <p style="padding-left: 2em;">가. ~ 파.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style="text-align: center;"><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 -----<u>금융거래</u> 등을 ----- ----- ----- ----- ----- ----- ----- ----- -----.</p> <p>제2조(정의) ----- -----.</p> <p>1. ----- -----.</p> <p style="padding-left: 2em;">가. ~ 파.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em;"><u>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u> <u>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u> <u>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u> <u>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u> <u>라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em;">1) <u>가상자산을 매도, 매수</u> <u>하는 행위</u></p> <p style="padding-left: 2em;">2) <u>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u></p>

현 행	개 정 안
<p>하. ----- 금융거래를----- ----- -----</p> <p>2. “<u>금융거래</u>”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u><신설></u></p>	<p><u>산과 교환하는 행위</u></p> <p>3) <u>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p> <p>4) <u>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u></p> <p>5) 1) 및 2)의 행위를 중개,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p> <p>6) <u>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p> <p>거. ----- 금융거래등을----- ----- -----</p> <p>2. “<u>금융거래등</u>”이란-----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하는 제1호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3. <u>“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u></p> <p>가. <u>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u></p> <p>나. 「<u>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u>」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u>결과물</u></p> <p>다. 「<u>전자금융거래법</u>」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p> <p>라. 「<u>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u>」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 등</p>

현행	개정안
<p>3. ~ 5. (생략)</p> <p>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p> <p>1. 제4조·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분석 및 제공</p> <p>2. ~ 3. (생략)</p> <p><신설></p> <p>4. 제11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p> <p>5. (생략)</p>	<p>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p> <p>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p> <p>사.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p> <p>4. ~ 6.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 ----- -----.</p> <p>1. -----제9조에 -----</p> <p>2. ~ 3. (현행과 같음)</p> <p>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사항</p> <p>5. 제15조의2에----- ----- -----</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6. 제1호부터 <u>제5호까지</u>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p> <p>②·③ (생략)</p> <p>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제7조에</u>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p> <p>2의2. <u>제7조의2에</u>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p> <p>3. <u>제8조에</u>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p> <p>4.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p>	<p>7. -----<u>제6호까지</u>의-----</p> <p>-----</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제10조에</u>-----</p> <p>-----</p> <p>-----</p> <p>2의2. <u>제10조의2에</u>-----</p> <p>-----</p> <p>-----</p> <p>3. <u>제11조에</u>-----</p> <p>-----</p> <p>-----</p> <p>4.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u></p> <p>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① -----</p> <p>-----</p>

현 행	개 정 안
<p>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 ----- -----.</p>
<p>1. <u>금융거래와</u> 관련하여 수수(授受)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p>	<p>1. <u>금융거래등과</u>----- ----- -----</p>
<p>2. <u>금융거래의</u>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u>금융거래</u>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p>	<p>2. <u>금융거래등의</u>----- ----- ----- -----<u>금융거래등</u> <u>을</u>----- ----- -----</p>
<p>3. (생략) ② ~ ⑤ (생략) ⑥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고 하거나 보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보고와 관련된 <u>금융거래의</u>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p>	<p>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 <u>금융거래등의</u>----- ----- -----.</p>

현 행	개 정 안
<p>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2. (생략)</p> <p>⑦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금융회사등(금융회사등의 종사자를 포함한다)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외에는 그 보고와 관련된 <u>금융거래의 상대방</u>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u>현금등</u>”이라 한다)을 <u>금융거래의 상대방</u>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領收)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 ----- -----.</p> <p>1.·2. (현행과 같음)</p> <p>⑦ ----- ----- ----- ----- ----- -----<u>금융거래등의</u>----- ----- -----.</p> <p>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 ----- ----- ----- ----- ----- ----- ----- ----- -----<u>금융거래등의</u>----- ----- ----- -----.</p>

현 행	개 정 안
<p>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3. (생략)</p> <p>② 금융회사등은 <u>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p> <p>③·④ (생략)</p> <p><u>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u> ① 금융회사등은 <u>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注意)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u></p> <p>1.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일회성 <u>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u></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u>금융거래등의</u> ----- -----<u>금융거래등을</u>-----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u>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u> ① -----<u>금융거래등을</u>----- ----- ----- -----.</p> <p>1. ----- ----- -----<u>금융거래등을</u>----- -----</p>

현행	개정안
<p>가.·나. (생략)</p> <p>2.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p> <p>가. (생략)</p> <p>나. <u>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 한정한다)</u></p> <p><u><신설></u></p>	<p>가.·나. (현행과 같음)</p> <p>2. -----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금융거래등의</u>----- ----- ----- ----- ----- -----</p> <p>3. <u>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u></p> <p><u>가. 제1호 또는 제2호 각 목의 사항</u></p> <p><u>나.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업무 지침에는 고객 및 <u>금융거래의</u> 유형별로 자</p>	<p><u>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항</u> <u>라.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u> <u>마.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에 관한 사항</u> 1) <u>예치금(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인 자로부터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을 고유재산(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재산을 말한다)과 구분하여 관리</u> 2) 「<u>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47조 또는 같은 법 제47조의3에 따른 <u>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 한다)의 획득</u></p> <p>② ----- -----<u>금융거래등의</u>-----</p>

현 행	개 정 안
<p>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방지와 관련되는 적절한 조치의 내용·절차·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p> <p>③ (생략)</p> <p>④ 금융회사등은 <u>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p><u><신 설></u></p>	<p>-----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p> <p>1. <u>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u></p> <p>2. <u>고객이 가상자산사업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p>가. <u>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u></p> <p>나. <u>제7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의 확인</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⑤ (생 략)</p> <p>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 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p> <p>1.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p> <p>가. 금융거래 상대방의 실지</p>	<p>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사실의 확인</p> <p>라. 제7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된 사실의 확인</p> <p>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p> <p>⑤ (현행과 같음)</p> <p>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 ----- ----- ----- ----- 금융 거래등의 관계가 ----- -----.</p> <p>1. ----- ----- -----</p> <p>가. 금융거래등-----</p>

현행	개정안
<p>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다. (생략)</p> <p>2. ~ 4. (생략)</p>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u>금융거래관계가 종료한 때</u>”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p> <p>1. ~ 3. (생략) <u><신설></u></p> <p>4. 그 밖의 <u>금융거래의</u>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p> <p>③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 -----</p> <p>나. -----<u>금융거래등 자료</u></p> <p>다.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② ----- -<u>금융거래등의 관계가</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제2조제2호라목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p> <p>5. -----<u>금융거래등의</u>----- -----</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u> <u>례</u></p> <p><u>제6조(적용범위 등) ① 이 장은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한다.</u></p> <p><u>②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u></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p> <p>③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제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조(신고 등) ① 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p>

현행	개정안
	<p><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1. <u>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u></p> <p>2. <u>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동일 금융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에 한한다)에 개설된 가상자산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의 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등을 허용하는 계정을 말한다]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않는 자. 다만,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u></p> <p>3. 이 법, 「<u>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u>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u></p>

현행	개정안
	<p> <u>를」, 「외국환거래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u> </p> <p> <u>4. 제4항에 따라 신고가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p> <p> <u>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u> </p> <p> <u>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p>

현행	개정안
	<p>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p> <p>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p> <p>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p> <p>1.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p> <p>2.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p> <p>3.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p>

현행	개정안
	<p><u>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p> <p>⑥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고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같은 행위를 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p> <p>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정보 및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p> <p>⑧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와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60 779 427 817"><신설></p> <p data-bbox="260 1243 427 1281"><신설></p> <p data-bbox="225 1373 788 1480">제6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생략)</p> <p data-bbox="225 1507 788 1615">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생략)</p> <p data-bbox="260 1704 788 1939">1. (생략) 2. 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p>	<p data-bbox="855 309 1385 416">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 data-bbox="855 443 1385 752">⑨ 금융회사등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개시하는 기준, 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data-bbox="820 779 1385 1223">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data-bbox="820 1243 1385 1350">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p> <p data-bbox="820 1373 1385 1480">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현행 제6조와 같음)</p> <p data-bbox="820 1507 1385 1677">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현행 제7조제1항과 같음)</p> <p data-bbox="855 1704 1385 1939">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에----- ----- -----</p>

현행	개정안
<p>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p>	<p>----- -----</p>
<p>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p>	<p>3. ----- -----제9조에----- ----- -----</p>
<p>② ~ ⑫ (생략)</p>	<p>② ~ ⑫ (현행과 같음)</p>
<p>제7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7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① ----- ----- -----제10조제1항제3호에----- -----제10조에----- ----- ----- ----- ----- ----- ----- ----- ----- -----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u>제8조</u>(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생략)</p>	<p><u>제11조</u>(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현행 제8조와 같음)</p>
<p><신설></p>	<p><u>제5장 보칙</u></p>
<p><u>제9조</u>(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u>제10조에</u>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u>제11조제7항에</u> 따라 제공받은 정보 및 <u>제7조제8항의</u>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u>제12조</u>(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 ----- ----- ----- -----<u>제13조에</u>----- -----<u>제15조제7항에</u>----- -----<u>제10조제8항의</u>----- ----- ----- ----- -----.</p>
<p>1. ~ 3의2. (생략)</p>	<p>1. ~ 3의2. (현행과 같음)</p>
<p>4. <u>제7조에</u> 따라 제공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사람</p>	<p>4. <u>제10조에</u>----- ----- ----- -----</p>
<p>5. <u>제11조제1항</u> 및 제6항에 따른 감독 및 검사를 한 자</p>	<p>5. <u>제15조제1항</u>----- -----</p>
<p>6. <u>제7조제9항에</u> 따라 정보분</p>	<p>6. <u>제10조제9항에</u>-----</p>

현 행	개 정 안
<p>석심의회에 참여하거나 정보 분석심의회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p>	<p>----- ----- -----</p>
<p>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u>제10조에</u>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u>제11조제7항에</u>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 ----- ----- -----<u>제13조에</u>----- ----- -----<u>제15조제7항에</u>----- ----- ----- ----- -----.</p>
<p>③ <u>제7조에</u>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다.</p>	<p>③ <u>제10조에</u>----- ----- -----.</p>
<p>④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참여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u>제13조 및 제14조와</u>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그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④ ----- ----- -----<u>제16조 및 제17조와</u>----- ----- ----- -----.</p>
<p><u>제9조의2</u>(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p>	<p><u>제12조의2</u>(특정금융거래정보 등</p>

현 행	개 정 안
<p>보존 및 폐기)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제6조·제10조·제11조 제7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통보 받은 정보 또는 자료(이하 이 조에서 “정보등”이라 한다)를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존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0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제7조제1항제3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제4조의2 또는 제6조에 따라 보고·통보받은 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의 보존 및 폐기) ① ----- ----- -----제9조·제13조·제15조제7항에----- ----- ----- -----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자료 제공의 요청 등) ① ----- -----제10조제1항제3호의----- ----- -----제9조에----- ----- -----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분석할 때에는 보고받거나 제공받은 사항이 제4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요구하는 <u>금융거래 관련 정보</u> 또는 자료의 내용</p> <p>④ (생략)</p> <p><u>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u> 제4조, 제4조의2, 제5조의3,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u>제11조제7항은</u>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② (생략)</p>	<p>③ ----- ----- ----- ----- ----- ----- ----- ----- ----- ----- ----- ----- -----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금융거래등 관련</u>----- -----</p> <p>④ (현행과 같음)</p> <p><u>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u> -----<u>제9조</u> ----- <u>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5조제7항은</u>----- ----- -----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장 감독·검사
제11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① ~ ⑤ (생략)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 ----- -----금융감독원장이 나----- ----- ----- ----- ----- ----- ----- ----- -----.
⑦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감독·검사를 하는 자는 감독·검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나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⑦ ----- ----- ----- -----금융거래등의 정 보나----- -----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제7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⑨ ----- -----금융거래등 정보를 -----

현행	개정안
<p>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감독·검사자료를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에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따른 감독·검사의 경우 <u>제11조제7항</u>을 준용한다.</p> <p><u><신설></u></p> <p><u>제13조(벌칙)</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4조제5항 또는 <u>제10조제3항</u>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u>금융거래</u>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p> <p>2. <u>제9조제1항</u>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u>제10조에</u></p>	<p>-----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15조제7항</u>----- <u>제7장 벌칙 등</u></p> <p><u>제16조(벌칙)</u> ----- ----- ----- ----- ----- ----- ----- -----</p> <p>1. -----<u>제13조제3항</u>----- ----- ----- ----- ----- ----- ----- -----<u>금 융거래등</u>----- -----</p> <p>2. <u>제12조제1항</u>----- ----- ----- ----- -----<u>제13조에</u>-----</p>

현 행	개 정 안
<p>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u>제11조제7항에</u>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제5조의3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 <u>제10조에</u> 따라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 및 <u>제11조제7항에</u>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p> <p>3. <u>제9조제1항을</u> 위반하여 <u>제7조제8항의</u> 정보분석심의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p> <p><u>제14조(벌칙) <신 설></u></p>	<p>----- -----<u>제15조제7항에</u>----- ----- ----- ----- ----- -----<u>제13조에</u>----- -----<u>제15조제7항에</u>----- ----- ----- -----</p> <p>3. <u>제12조제1항을</u>-----<u>제10조제8항의</u>----- ----- ----- ----- ----- ----- ----- ----- -----</p> <p>-</p> <p><u>제17조(벌칙) ①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u></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생 략)</p> <p><u>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및 제14조에</u>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竝科)할 수 있다.</p> <p><u>제16조(양벌규정)</u>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u>제14조의</u>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p>	<p><u>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포함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u>②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p> <p><u>③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u></p> <p><u>제18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6조-----제17조에-----</u> ----- -----.</p> <p><u>제19조(양벌규정)</u> ----- ----- ----- ----- <u>제17조의</u>----- ----- -----</p>

현 행	개 정 안
<p>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 ----- ----- -----.</p>
<p><u>제17조(과태료) ① (생략)</u> 1. 2. (생략) <u><신설></u> 3. <u>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u>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③ (생략)</p>	<p><u>제2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u> 1. 2. (현행과 같음) 3. <u>제8조를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u> 4. <u>제15조제1항부터</u>----- ----- ----- ----- ----- ----- ②·③ (현행과 같음)</p>